『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



(Ver 24.6.)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 동법 시행령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 동법 시행령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응시 자격	 가. 1급 소방안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황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알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라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및 산점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라 등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시험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 접수 후 시험응시일 이전까지 해당 서류 제출 시험명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 시험일정 : 별도 안내 (안전원 홈페이지 www.kfsi.or.kr) * 제1차, 제2차 시험 분리운영 • 사이트 시험일정 참고(소방안전교육 >시험신청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일정) 시험 일정 정보 등 ※ 참고 사항 - 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점수확인" 코너 중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시험일정 및 장소는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등재됩니다.

		구분 과목	2		내용						
		1과 5	○ 화재통 ○ 위험물 ○ 직업윤 ○ 소방관 ○ 건축· 건 ○ 재난관 ○ 초고층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안전관리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소방관계법령 ○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 초고층재난관리법령 ○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시험과목	제1차 시 험 2과 ⁹	역소· 등 고층건 공사장 의기취 종합방 의 고층건 화재원 의 고층건 의 가원	○ 소방기초이론 ○ 연소· 방화· 방폭공학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 종합방재실 운용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화재원인 조사실무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피난안전구역 운영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화재피해 복구							
시호	범	1과 =	목 ○ 소방시설	○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실습·평가							
정보		제2차 시 험 2과 ⁹ ※ 근거:	통합안소방계방재계구조 및소방안화재 시자위소업무수	획 수립 이론·실습·평기 검서식의 작성 실습·평 ! 응급처치 이론·실습· 전 교육 및 훈련 이론 초기대응 및 피난 설 방 및 피해경감계획 = 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전기, 승강기 등) 평가(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평가 급·평가 네론·실습·평가 낸 실습·평가 내 수립 이론·실습·평가						
		2) 관련 법률	과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시행중인 등을 적용								
		-	·		(서술형 주관식) 공통						
	시험방법	시험구분	출제과목	시험 방법	시험시간	문항수					
	및 시간	제1차 시험	1과목, 2과목	선택형 (4지 1선택)	120분	100문항 (과목별 50문항)					
		제2차 시험	1과목, 2과목	서술형 (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 포함)	90분	총 20문항 (과목별 10문항)					



		시험구분 시험 방법										
		시임구군			그 저그 가지 이사 도꾸린 기라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가접수자의 경	!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 우 추가서류 제출기간 중 추가서류: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제2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민	·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 ⁴	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발표일기	다 : 시험정보 - /	시험일정 등 참조								
시험	합격자 발표	• 발표내용	용 : 합격자 명단((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_		• 발표방병	법 : 안전원사이트	(www.kfsi.or.kr) 공지사항								
정보		※ 가접수	※ 가접수자의 추가서류접수 후 확인 결과 응시자격 기준 미달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관 : 안전원 15개 	시·도 지부								
	되거조 바그	• 신청방법		1日에 내바리어 바그시킨기 자셔	를 비그							
	자격증 발급			l부에 내방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의 온라인 발급 신청에 [
			'전 선정 · 전선전 수료 및 배송료 별		사는 걸면							
	시험의 일부	-			 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							
	면제사항	※ 합격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 ※ 합격한 날(합격자 발표일)과 시험실시 일 기준으로 처리									
	접수처	안전원 인	안전원 인터넷사이트 <u>※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접수합니다.(응시자격 심사는 가능)</u>									
			구 분	시도지부 방문접수 (근무시간 : 9:00 ~ 18:00)	안전원 사이트 접수 (www.kfsi.or.kr)							
		접수	시 관련 서류	응시수수료 (현금,카드 등)사진 1매응시자격별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 응시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증빙이	불필요한 경우	가 능	가 능							
		(최초 호	l 필요한 경우 학력,경력,학경력, 다격증의 경우)	가 능	가 능 단, 사전심사 필요 (5~7일 소요)							
시험		* 안전원	사이트 접수 시									
, _		· 강습교육	수료 또는 증빙서	· 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수 자격시험	에 응시이력이 있을 경우							
접수	접수방법	→ '시험일	일정'에서 접수가	5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한								
			→ 홈페이지 내의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서 해당 응시자격 신청(증빙자료 첨부 必) 단, 5~7일 소요되며, 심사완료 후 승인 시 '시험일정'에서 접수 가능									
		·	~/팔 조표되며, (시험일정의 경우		저 입구 가능							
		1. 2. 3 3. 4	[접수시 주의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시험일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 전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가능하며 시험당일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결시자 중심 사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 등으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구 분		수수료						
	수수료			1차		18,000 원						
	十十五			2차				24,000 원				
				현금(무통장입금								
		-		일 납부하거나 현금영	경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	J다) 		
	접수	│ • 원서접수 기간 : 별도 안내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										
	내용변경	수내용 변경 불가										
		1. 시	험응시원	원서 \star 방문 접수 시	l 신분증 7	[] 참						
				3.5cm x 4.5cm)								
	제출서류			서류심사 신청서								
				증명서류 경력 등 시험접수:	다 주 눠	으으 시	회에 으시	l하느 겨9	으에 하하			
시험		<i>∧</i> 0, ′			^{시 6 시} 1 분				구에 된놈 			
접수			ДI			취소하는	 경우		급 약 액 환불			
_ `				시험시행일					물 불가			
						<예시>						
	환불 규정		요일 월		화	수	목	己	토			
			히ㅂ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특급 시험					-		
			환불 기준	ᅠ<□ 전액환불	환불불가 ⇨							
		※ 시험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시험시행 5일 전일까지 가능. 단, 방문 환										
				요일, 공휴일은 불	불가							
		• 시험장소 : 별도 안내										
VI	험 장 소	•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기간 중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시표 교부	• 시험장 위치는 www.kfsi.or.kr 접속하여 "안전원소개-찾아오시는길" 참조 시험응시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0	<u> </u>			응시표에서 정한				부 저까	TI 이시)mlTl	으시		
				, 필기도구를 지침		•			•			
				, 될기도구들 시원 합니다.	3 OI 12 A	10건 뙤~	יאו איי	OIG VIE	ㅋㅁㅋ근ᅴ 끼	그근네		
				접수 시 본인이	서택하 T	역 및 시	험장소의	지정된 :	자석 (N) 이 지	·수 밀		
				시험에 응시할 수				.,	0			
							변을 확인	후 입실/	시간 전까지 시험	험당일		
h h	- 1 0.1171		2)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 후 입실시간 전까지 시험당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ΥI	험 응시자	3)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유의 사항	*	신분증	등의 범위 : 공무원	증, 주민	등록증(주!	민등록증별	발급확인서	서 포함), 운전면	변허증,		
Ŧ	T-1 /1/8	여	권 및 호	학생증(사진이 부칙	학된 학생	증에 한함	·)에 한함					
		4) 응	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시험 시험	행일 전에	는 안전원	홈페이지	디에서 재출력 :	가능하		
		며, 시험당일에는 시험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1차(객관식)시험의 OMR 답안지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시험교시,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작성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제2차(서술형 주관식)시험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2가지 이상 혼합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됩니다.)
 -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 4. 제2차(서술형 주관식)시험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5. 시험실내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전기 등),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액정 및 메모리 기능이 있거나 다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촬영 및 녹취가 가능한 기 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중 휴대할 수 없습니다.
 - ※ 휴대전화 등 금지품목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하거나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 6. 제1·2차 시험 모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시험감독관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거나 응시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어 가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8.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합니다.
- 9.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시간 1/2 경과 후부터 시험지답안지 제출 후 퇴실이 가능하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를 제출 한 후 퇴실 가능
- 10.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하며,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1. 시험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12. 응시자는 시험시행 공고문, 응시표, 시험장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13. "가접수자"는 접수기간 중 접수(시험응시원서 및 경력관련서류 등 제출)해야 하며, 시험응시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응시자격 기준 미달인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14.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15. 시험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지역별로 주차료가 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 등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안전원 사이트 로그인
- 2. 안전원 사이트 "소방안전교육-시험신청" ⇨ "시험일정" 클릭 ⇨ 응시하고자하는 지 부 시험날짜 클릭 ⇨ 시험신청자 정보입력 ⇨ 신용카드 결제 또는 LG데이콤 무통장 계좌할당 및 입금 ⇨ 시험신청 완료

인터넷 시험접수 및 결제방법 안내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시험일정이 안전원 홈페이지에 등재됩니다.
-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영등포)	02-850-1378	서울동부지부 (서울 신설동)	02-850-1392
부산지부 (부산 금정구)	051-553-8423	대구경북지부 (대구 중구)	053-431-2393
인천지부 (인천 서구)	032-569-1971	울산지부 (울산 남구)	052-256-9011
경기지부 (수원 팔달구)	031-257-0131	경기북부지부 (파주)	031-945-3118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	경남지부 (창원 의창구)	055-237-2071
충북지부 (청주 서원구)	043-237-3119	광주전남지부 (광주 광산구)	062-942-6679
강원지부 (횡성군)	033-345-2119	전북지부 (전북 완주군)	063-212-8315
제주지부 (제주시)	064-758-8047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 음영부분은 특	투급 소방안전	!관리자 시험접<	수자에 현	한하여 []에 ✓표를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시험장소(응시지역)								
응시자	성명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 진 (가로 3.5cm × 세로 4.5cm)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륗」제32조제1형 소방안전관리자					받은 법	시항	성규칙		
								년	<u> </u>	월	일		
				응시자					(서	명 또	는 인)		
한국소방업	안전원징	귀하											
		1. 사진(가로	[(가로 3.5cm × 세로 4.5cm)					수수료					
응시자 제출서류 등		2. 응시자격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3. 응시자 신분증(본인여부 확인 용도)						특급	1차시험	1만	8천원		
								특급	2차시험	2만	4천원		
4. 대리			인의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 • 2 • 3	급 시험	1만	2천원		
				···············(자르는 신	<u>1)</u>								
				응 시 표	<u>E</u>								
응시번호	[] 제1차시험 시		시험장소(응시지	장소(응시지역)									
		[] 제2차시험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사 진 (가로 3.5cm ×					
시험일시						세로 4.5	ocm)						
							년	월	<u> </u>	일			
			하	국소방안전	워장 🖟	<u>Ō</u>]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색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야 합니다.